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5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총괄 검토	3
2.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안 제197조)	7
3. 설립 및 운영 특례(안 제234조의2·제234조의3 신설)	12
4. 임원의 구성(안 제234조의4 신설)	14
5. 학위과정 등(안 제234조의6 신설)	16
6. 제주자치도 및 개발센터의 지원(안 제234조의7·제234조의13 신설) ..	18
7. 출연금 등(안 제234조의8~제234조의11 신설)	20
8.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안 제234조의12 신설) ...	25
9. 다른 법률의 준용(안 제234조의14 신설)	2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는 관광·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고급 과학기술 인재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이른바 ‘인재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인력 유출은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제주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본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 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OIST(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를 설립하여 학과 간 장벽 없는 조직 운영과 국제화를 기반으로 세계적 석학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적 연구 거점으로 성장한 바 있음. 또한 연구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Block Funding)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 사례로 평가됨.

제주 또한 영어교육도시, 무비자 입국 제도 등 국제적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외 석학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함.

이에 OIST 모델을 참고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학과 구분 없는 융합 연구 체계를 도입하며,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재 양성 → 지역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를 지식기반 산업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교원, 학생 및 연구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석학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교육 지원 등 정주 지원 특례를 마련 하려는 것임. 아울러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어 개원 준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총괄 검토

개정안은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을 설립하여 학과 구분 없는 융합 연구 체계, 국가의 포괄적 연구비 출연, 높은 비율의 외국인 인력 확보, 정주 지원 특례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적 연구 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신 설>	제3절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제234조의2(설립)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제234조의7(제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제234조의8(출연금)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제234조의10(보조금)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제234조의1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례)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개정안은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을 설립하여 제주 지역에 첨단 연구·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유치·양성함으로써 지역혁신 역량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나아가 국내 기존 과학기술원과 차별화된 국제·융합 연구거점을 제주에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대전·광주·대구·울산 등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각각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바,¹⁾

제주과기원에 대해서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두는 방식은 과학기술원 제도 전반의 법체계 및 기존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1) 과학기술원 설립 현황

구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개교	1971년	1995년	2011년	2009년
근거 법 (제정일)	한국과학기술원법 (1980.12.31.)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8.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3.12.11.)	울산과학기술원법 (2007.4.6.)

제주과기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 설립법을 제정하여 다른 과학기술원과의 법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주특별법에는 설립의 기본 방향과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인력 비율 의무화, 포괄출연금 방식의 연구비 지원,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출입국·체류 및 자녀 교육 등 광범위한 정주 지원 특례는 타 과학기술원 및 일반 대학·연구기관과의 형평성, 예산법률주의 및 재정 건전성, 출입국 관리 체계와의 조화, 국민·도민의 수용 가능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바,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제도의 필요성, 특례의 범위·수준,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이미 대전·광주·대구·울산에 과학기술원이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과기원을 추가 설립할 경우 인재 양성 역량 분산으로 인한 연구·교육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과 각종 특례 부여에는 재정 부담이 수반되고, 지역 간·대학 간 형평성 및 출입국 특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설립 필요성 및 특례의 적절성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과학기술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법과 같은 포괄적 특별법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의 사례와 같이 개별 법률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는 학령인구 감소, 재정 소요, 타 지역 대학·연구·공공기관과의 형평성, 기존 선례 등을 고려하여 과기원 추가 설립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조직·운영과 특례 부여 등 개별 조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주과기원 설립 여부를 먼저 결정한 이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안 제197조)

개정안은 제주국제과학기술원 관련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 및 가족 등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 특례 및 체류자격 완화, 특별체류 자격 부여 등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u>관광·통과</u>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 <u>관광·교육·연구·통과</u>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무부장관은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에서 <u>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국 절차 및 체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신설>	⑤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학기술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제주 자치도 내에서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나 관련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제197조는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교육·연구” 목적을 추가하고 제주과기원 관련 외국인에 대한 별도 체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정착을 지원하여 국제화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출입국·체류 관리의 기본원칙 및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교육·연구 목적을 포함하여 무사증 입국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안 제1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²⁾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장기 교육·연구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체류자격³⁾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사전에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유학비자(D-2)와 연수비자(D-4)는 학위과정·비학위 연수 등 교육 목적의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하여 입학허가서 등 증빙을 바탕으로 체류 목적, 기간,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제주 무사증 제도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를 전제로 관광·통과 등 일시 방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특례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교육·연구 목적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경우 사전 비자 심사 제도와 단기 무사증 입국 제도 간 기능·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2 유학, D-4 일반연수, E-계열 연구·교수 비자 등

구분	사증 유형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 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중 발체

둘째, 안 제4항은 제주과기원 소속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입국절차 및 체류자격 완화 특례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제주과기원 설립사업의 내용, 인원 규모, 지원 범위 등 제반 사항이 구체화된 이후에 장기체류에 관한 포괄적 특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임.

현행 제도에서도 무사증 입국자를 중심으로 한 불법취업·불법체류 우려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어,⁴⁾ 체류 목적·대상·규모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체류 특례를 확대할 경우, 출입국·체류 관리 정책 전반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5항은 제주과기원 졸업 외국인에 대하여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지역·기관의 졸업자에 대하여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대학·연구기관을 졸업한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지역·기관 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대학·연구기관이 유사한 특례 도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체류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 측면에

4) 제주일보, “불법취업 잇따라...무사증 재개 부작용 우려 현실로”, 2022.07.31.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1>

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법무부는 출입국 관련 특례에 대하여, 제주 무사증 제도의 본래 취지, 「출입국관리법」 체계와의 법적 정합성, 장기 체류 확대에 따른 사회·재정적 부담, 타 지역·기관과의 형평성 등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설립 및 운영 특례(안 제234조의2·제234조의3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법인 형태의 제주과기원을 설립하고, 학과·학부를 두지 않는 연구단위 중심의 융합 교육·연구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4조의2(설립) ① 제주자치도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의 지식 기반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 설>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①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제주과기원은 학문 간 장벽 없는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학부를 두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주과기원은 연구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3은 제주과기원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과 구분 없는 융합 연구·교육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이하 “OIST”) 등에서 볼 수 있는 학과 폐지·연구단위 중심 조직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2항에서 학과·학부를 두지 않는 교육과정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으로 인용한 「고등교육법」 제20조는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학과·학부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⁵⁾ 실제 특례의 대상이 되는 규정⁶⁾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3항에서 “연구단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및 현행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연구단위의 개념·범위 또는 조직 편제와의 연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단위의 의미 등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⁷⁾

5)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6) (예시)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의 조직)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7)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제주과기원이 OIST(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모델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OIST는 전통적인 학과(department)를 두지 않고 교수 1인 또는 소수 인원을 중심으로 한 “Research Unit”을 기본 조직단위로 하여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연구단위”는 OIST식 연구 유닛(unit)을 염두에 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현행 고등교육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는 “연구단위”를 학과·학부와 유사한 일반적 조직단위로 정의하거나 그 유형·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용어의 의미와 범위는 입법단계에서 별도 정의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개념으로 보임.

3. 임원의 구성(안 제234조의4 신설)

개정안은 제주과기원의 임원으로 이사장·총장을 포함한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사·감사 및 총장 선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① 제주과기원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회는 국제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제적 교육·연구 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이사, 감사 선임과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지식과 국제적 교육·연구기관 운영 경험, 제주 지역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제주과기원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사회 구성 요건의 적정성 및 기존 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제2항에서 이사회 의 일정 비율을 외국인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은, 인사의 전문성과 책임성과는 별개로 국적에 따라 이사 선임이 제약될 수 있어 제도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해당 분야 외국인 인재 풀의 규모·구성에 따라 이사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교육·연구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사 자격요건은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격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세부 유형이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4항은 이사·감사 및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과기정통부장관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다른 과학기술원 근거법에서는 이사·감사·총장 선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⁸⁾ 제주과기원에 대해서만 교육부장관의 관여 방식을 ‘동의’가 아닌 ‘협의’로 완화하는 것이 유사 과학기술원에 대한 규율 체계와 비교할 때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학위과정 등(안 제234조의6 신설)

개정안은 제주과기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교원·연구원·학생의 외국인 비율을 각각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며,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8)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임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총장)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① 제주과기원에 박사 과정을 둔다. ②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비율이 각각 전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 수여, 입학 자격 및 방법 등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제주과기원을 박사과정 중심⁹⁾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 기관으로 설정하고, 구성원의 높은 국제화를 통해 교육·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국제적 연구거점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교원·연구원·학생 중 외국인 비율을 각각 전체 인원의 50% 이상으로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국내 고등교육 관련 법제에서 외국인 비율을 법정 의무로 설정한 사례가 드물고, KAIST의 경우 전체 교원 중 약 19.6%, 전체 학생 중 약 8.4%가 외국인으로 국제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구성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¹⁰⁾ 비교적 높은

9)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개정안과 달리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KAIST, 「KAIST 2024-2025 International Student Viewbook」, KAIST International Office, 2024(자료 기준 연도)

수준의 기준을 의무규정으로 설정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동 조에 대해서는 실제 인력 수급 여건, 국내 인재 양성과의 관계, 다른 과학기술원·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달성 가능성과 규정 방식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제주자치도 및 개발센터의 지원(안 제234조의7·제234조의13 신설)

제234조의7은 제주자치도가 제주과기원의 교원·연구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시설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등 정주환경 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반시설 설치, 산학협력기금 설치·운용, 국제학교 정원 외·우선 입학, 그 밖의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34조의13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부지 조성·건축, 정주지원시설 조성·운영, 재원 출연·출자 등을 통하여 제주과기원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① 제

현행	개정안
	<u>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시설의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④ <u>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연구원의 자녀는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제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우선 입학할 수 있다.</u> ⑤ <u>제주자치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u>
<신설>	<u>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례) ① 개발센터는 제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u> <u>1. 제주과기원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건축</u> <u>2. 교원·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정주지원시설의 조성 및 운영</u> <u>3. 제주과기원의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재원 출연</u> ② <u>개발센터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과기원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u>

두 조항은 제주과기원 교원·연구원 및 가족에 대한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제주과기원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지역 여건상 인력 유치·정착 지원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제234조의7 제1항은 제주과기원의 교원·연구원 등에 대한 주거시설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등 정주환경 조성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교원·연구원 자녀에게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정원 외 입학 및 우선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의 “교원·연구원·가족”에는 국적 제한이 없어 이를 내국인·외국인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주자치도가 특정 기관 소속 내국인 인력과 그 가족에게 주거·복지·국제학교 입학 등에서 우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제주 내 다른 대학·연구기관 종사자 및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출연금 등(안 제234조의8부터 제234조의11까지 신설)

개정안 제234조의8부터 제234조의11까지는 제주과기원에 대하여 국가·제주자치도·공공기관의 출연금과 국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고, 특히 연구비는 국가가 매년 포괄출연금 형태로 총액을 지급 하도록 하며, 별도의 자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4조의8(출연금)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주 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① 국가는 제주 과기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총장 은 학칙에 따라 이를 연구단위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4조의10(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과기원 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① 제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

현행	개정안
	<u>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u> <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1. <u>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u> 2. <u>기금운용 수익금</u> 3. <u>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u> <u>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u> 1. <u>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u> 2. <u>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연구 시설의 설치·운영</u> 3. <u>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u> <u>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제234조의8은 국가·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제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근거 규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등 다른 과학기술원법에도 유사한 출연금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¹⁾ 기본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1)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9는 국가가 제주과기원에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¹²⁾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며, 총장이 학칙에 따라 이를 각 연구단위에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등, OIST 사례와 같이 정부가 기관에 총액을 맡기고 기관이 내부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러한 방식은 제주과기원의 자율성과 장기적·융합적 연구수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과학기술원들이 개정안 제234조의8과 같은 일반적인 출연금 규정만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과기원에 대해서만 국가의 연구비 총액 지급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포괄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사업·과제별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기존 국가연구개발 재정관리 체계와 달리, 사업별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관이 자율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는바,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통제 및 책임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국회 예산심의 권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234조의10은 제234조의8의 일반 출연금, 제234조의9의 연구비 포괄출연금과 별도로 국가의 보조금 지원 의무를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다수의 재정지원 특례가 중첩적으로 규정될 경우 실제 예산 편성·집행 단계에서 지원 재원이 중복되거나,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해 유리한 지원 구조로 비추어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출연금 일반 재원, 연구지원 출연금, 보조금의 기능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는 규정은 통합·정리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조문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34조의11은 제주과기원이 정부 외 출연금·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연구개발 자금,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의 기금 설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¹³⁾ 수용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능성이 있는 입법조치로 보임.

8.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안 제234조의12 신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주과기원에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4조의1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의 국유재산·공유재산 무상양여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¹⁴⁾ 제주과기원에 대해서도 KAIST와

14) 「한국과학기술원법」

유사한 수준의 국·공유재산 특례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 이미 출연금·보조금 지원, 기금 설치 등 다양한 재정지원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방정부 유상사용 원칙 및 보충성·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무상 양여 등의 요건을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11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다른 법률의 준용(제234조의14 신설)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 체계를 기본 모델로 삼아, 제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각각 “제주과기원”으로 본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법」은 KAIST라는 특정 기관을 전제로 한 개별 설립법으로, 그 전반을 제주과기원에 일괄적으로 준용할 경우 제주과기원의 고유한 역할과 지역적·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예컨대 동 법률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연구계획서·연구보고서 제출 의무(제12조),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제14조의3),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제15조의4) 등은 KAIST의 기능과 정책적 역할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교육·연구 및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제주과기원의 설립·운영 취지와는 일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또한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이미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구조인데,¹⁵⁾ 개정안과 같이 두 법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준용할 경우 규범 체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학기술원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기보다는, 필요한 규율 사항을 선별하여 개정안에 개별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거나, 민법상 재단법인 일반 규정을 중심으로 별도의 준용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

15)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u>관광·통과</u>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 <u>관광·교육·연구·통과</u>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무부장관은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에서 <u>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국 절차 및 체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신설>	⑤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u>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하거나 관련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절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제234조의2(설립) ① 제주자치도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의 지식 기반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①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제주과기원은 학문 간 장벽 없는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학부를 두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주과기원은 연구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① 제주과기원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회는 국제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개정안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제적 교육·연구 기관의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이사, 감사 선임과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① 제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경우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이 경우 연구원의 유형과 임용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주과기원은 교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때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현행	개정안
	되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와 처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① 제주과기원에 박사 과정을 둔다. ②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비율이 각각 전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 수여, 입학 자격 및 방법 등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시설의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원활한

현행	개정안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연구원의 자녀는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제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우선 입학할 수 있다. ⑤ 제주자치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제234조의8(출연금)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① 국가는 제주과기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을

현행	개정안
	<u>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학칙에 따라 이를 연구단위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34조의10(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과기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① 제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연구 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

현행	개정안
<신설>	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례) ① 개발센터는 제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주과기원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건축 2. 교원·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정주지원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제주과기원의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자원 출연 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과기원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신설>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

현행	개정안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략) <신설>	<u>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각각 “제주과기원”으로 본다.</u>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제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제2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임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